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46

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문진석·정성호·서영석

이정문 • 이연희 • 정준호

이재관 · 강훈식 · 송옥주

백혜련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공주택 공급의 촉진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 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기존주택 등에 대해 지방세 감 면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수준(취득세 25%, 재산세 50%)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하고(안 제31조제6항·제7항), 청년·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 제공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재산세 25% 감면을 신설하고자 함(안 제31조제8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한다"를 "한다)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(이하 이조에서 "지방주택공사"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"한국토지주택공사"를 "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주택공사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(이하 이 항에서 "공공주택사업자"라 한다)가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지분적립형 주택"이라 한다)으로 최초로 공급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그 주택(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한정한다)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. 다만, 해당 주택이 과세기준일현재 지분적립형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1조(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	제31조(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		
면) ① ~ ⑤ (생 략)	면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		
⑥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	6		
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			
(이하 "한국토지주택공사"라			
한다)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	한다)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		
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	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		
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	으로 설립된 지방공사(이하 이		
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	조에서 "지방주택공사"라 한다		
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			
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			
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			
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			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			
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			
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.		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		
⑦ 제6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	⑦		
대상에는 <u>한국토지주택공사</u> 가	한국토지주택공사 및		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3조제	<u> 지방주택공사</u>		
1항에 따라 매입하여 세대수ㆍ			
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			
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건			
축물을 포함한다.			

<신 설>

⑧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(이하 이 항에서 "공공주택사업자"라 한다)가 주택을 취득한 후 같 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지분적립형 주택"이라 한다)으로 최초로 공급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 은 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 우 그 주택(공공주택사업자 소 유 지분에 한정한다)에 대해서 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 간 재산세 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. 다 만, 해당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적립형 주택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